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2. 4. 22.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경위

2002. 4. 22. 제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김순금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2.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마포구 행정기구와 통일성을 기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총무건설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시민도시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3호)

4.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2000.1.12법률제6115호) 제50조, 제54조

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2001.7.25조례제492호)

제4조, 제5조, 제6조등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건설위원회 - 11명

3. 복지도시위원회 - 12명

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건설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동항제3호 중 "시민도시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0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①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7월· 8월중"을 "9월· 10월중"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중1인)"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중1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생략)</p> <p>1. (생략)</p> <p>2. <u>총무건설위원회</u> - 11명</p> <p>3. <u>시민도시위원회</u> - 12명</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건설위원회</u> - 11명</p> <p>3. <u>복지도시위원회</u> - 12명</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총무건설위원회</u></p> <p>가.- 라. (생략)</p> <p>3. <u>시민도시위원회</u></p> <p>가.- 라.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건설위원회</u></p> <p>가.- 라. (현행과 같음)</p> <p>3. <u>복지도시위원회</u></p> <p>가.- 라. (현행과 같음)</p>